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고찰

오 윤 성*

◇ 목 차 ◇

-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한국에서의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
 - IV.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의 문제점과 대책
 - V. 결 론
- 참고문현
ABSTRACT
-

I. 서 론

오늘날 범죄문제는 국민들에 있어서는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의 하나로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IMF체제 이후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가정해체를 비롯 노숙자들도 많이 증가하였고 종전에는 잘 나타나지 않던 특이한 범죄¹⁾ 등 전반적인 사회적 일탈현상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전국 교도소

* 제55보병사단 현병대장, 육군중령, 법학박사

1) 최근 농촌에서는 농산물은 물론 수해로 과일의 품귀현상이 일자 차를 이용해 과수원을 털거나 농가에서 기르는 가축까지 훔쳐 가는 IMF형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에는 최대 인원이 수용되어 추가적인 수형자 수감을 위해 교도소 증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은 시민들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제 범죄의 공포나 두려움은 특정한 사람만의 것이 더 이상 아닌 모든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주체로 크게 나누어 보았을 때 3개의 기본적인 축을 들 수 있다. 경찰(national police)과 사경비(private security),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민간자율방범이다. 이 중 경찰의 활동은 국가의 공권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사경비의 운영은 영리적 목적과 개인의 치안욕구가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자율방범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치안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가 없이 봉사하는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경찰제도의 존립목적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시민의 행복증진과 공공복지의 실현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경찰 또는 국가기관만이 전적으로 사회의 안전이나 방범활동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또 설사 국가기관(경찰)측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자 해도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범죄예방 및 치안질서의 유지는 시민 개개인이 그의 책임범위 내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전제하에서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경찰의 방범활동은 시민들의 자조의식과 노력이 결합될 때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²⁾

최근 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 중 하나는 시민들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지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자신과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안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관심이다.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범죄통제나 범인 체포보다는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범죄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범죄 예방 분야가 전통적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책임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환경의 변화와 증가되는 범죄피해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시민들과 지역단체들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스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이러한 활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일파적인 측면³⁾이 아니라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2) 신동운, '민간의 자율방범활동', 형사정책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0, 창간호), p. 320.

3) 최근 장사가 안돼 상습적으로 불을 질러 2년 동안 13채의 집을 태운 방화범을 자비로 주민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검거 후 경찰에 인계하는 등 주민의 자구적인 노력이 종대되고 있다.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형사사법절차 및 이와 관련된 여러 부문에서 민간봉사자의 참여가 늘고 있는 것은 범죄라는 사회현상에 대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제도 만으로만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의 확산에 근거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경찰의 제한된 인력으로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에서 비롯된다. 또한 일반시민들이 자신 및 주위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일종의 자구책과도 직결되며 지역주민 개개인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스스로 증대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민간봉사자의 참여가 늘어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보다 현대적인 형사사법의 범죄대응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범죄예방활동에의 지역주민참여의 효과는 특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문제인식과 분석에 근거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범죄예방노력을 통하여 경찰은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의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지역사회는 범죄를 줄이고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지역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적 방범활동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 점차적으로 주민들에게 보편화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시작된 것은 역사로 보아 외국의 경우⁵⁾에 비해 깊지 않으며 체계적으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과 연계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 내는 데에도 아직도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과연 범죄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율방범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민간인에 의한 자율적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와 주민과의

4) 최인섭,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간인 참여,' 「범죄예방정책과 방향」(제13회 형사정책세미나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pp. 126~127.

5) 중세시대 영국에서는 경찰과 민간의 구분 자체가 모호하였다. 국왕은 지방귀족에 대하여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를 영토권으로서 부여하는 대신에 치안유지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유민에 대해서는 10가족으로 구성된 「십인조」를 조직케 한 후, 1명의 조장을 선출한 뒤 십인조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게 하였는데, 이 제도에 따라 십인조의 구성원은 범죄를 인지했을 때 큰소리로 사람을 부르고, 범인을 추적, 체포하는 의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상호보증제도(mutual pledge system)가 영국 치안유지제도의 기본이다.

또한 이러한 감시인 제도에 따라 모든 자유인은 성년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치안판사 이전에 치안유지의무를 완수하겠다는 선서가 요구되었다. 上野治男, 美國の 警察, 東京 : 良書普及會, 1982, p. 12.

관계는 어떠해야 하며, 이들 단체가 공식적 사회통제 기관인 경찰과의 관련성은 어떤 식으로 정립되어야 하는 가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범죄예방활동의 성격과 관련 이론, 외국에서의 예를 살펴보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단체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면담과 제공자료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고찰한 뒤 한국에서의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의 운용상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함으로서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한국에서의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현대사회에 있어서 경찰 자체만으로는 범죄를 감소시킬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범죄율의 감소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해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역감시(block watch)나 동행봉사(escort service), 이동순찰(mobile patrol)과 같은 다양한 지역 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활동에는 빈집에 대하여 비공식적으로 이웃집에서 감시하거나, 의심스러워 보이는 사람을 감시하거나 동네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어린이를 꾸짖거나 범죄행위를 말리는 등 적절한 행동을 규정한 지역 사회 규범을 바로 세우고 강화하기 위한 시민활동들이 있다. 이러한 행위들을 비공식적 사회통제(informal social control)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비공식적인 사회통제의 주체는 개인이나 동료집단 등의 기초적인 집단이 규범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넣는 형태에서부터 지역사회조직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존재한다.⁶⁾ 시민에 의한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공식적인 사회통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도록 지원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주민들은 단지 그들이 관찰한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넘어서 훈계나 감시, 순찰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범죄를 억제할 수도 있다.⁷⁾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공식적인 사회통제는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사실상 두 형태의 통제는 상호보완적이다.

지역주민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지역사회의 규범 및 규칙을 형성하고, 이를 잘 준수케하여 지역사회의 일탈 및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활동이 제시될 수 있다. 즉

6) Conklin, John E. 1989. Criminology, 3rd ed., NY: Macmillan Publishing Co. pp. 360~363.

7) Black, Donald J. The Behavior of Law, NY: Academic Press, 1976, pp. 107~111.

경찰이나 국가기관의 공식적 사회통제를 보완하여 지역사회의 범죄통제능력을 강화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지역사회 범죄예방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잘 훈련된 경찰력이다. 특히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서 시민의 참여는 바람직한 것을 넘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범죄문제의 해결은 경찰과 시민과의 상호 협력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⁸⁾

1.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의 성격

지역주민에 의한 범죄예방활동은 서구 각국에서 이미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 분야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즉 자물쇠를 점검하고 교체하는 단순한 활동에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 우범지역을 순찰함으로서 경찰의 눈과 귀가 되어 범죄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조직화된 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에 의한 범죄예방활동에의 참여는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⁹⁾

범죄예방이 모든 시민의 책임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법 집행 역사의 초기인 2,000여년 전에도 그 당시 치안체제는 상호책임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이웃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했다. 치안은 대개의 경우 관리에 의해서라기보다 전체 공동사회에 의해 유지되었다.¹⁰⁾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 민간참여의 역사는 뿌리깊은 연혁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의 방범활동은 점차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한국에서의 국가경찰이 대류법계 경찰의 성격을 떤다면 민간자율방범단체의 활동은 영미법계 경찰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은 잠재적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행위가 노출될 위험을 증대시키고 시민과 경찰간의 관계를 개선하며,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무력감을 극복하게 하는 등 주민간의 공동체의식 고양과 자신의 주거환경에 대한 비공식적 사회통제능력을 고양시키는 등의 여러 목적을 가지고 있다.¹¹⁾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프로그

8) *ibid.*, p. 38.

9) 최인섭, *전계논문*, p. 102.

10) 하워드 얼 저, 김충남 역, *경찰과 지역사회*, 서울 : 여명출판사, 1992, p. 253.

11) 최인섭, *전계논문*, p. 103.

램의 창조를 위한 원동력은 경찰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성 저하, 시민의 범죄공포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웃활동프로그램은 다양한 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개인 혹은 이웃을 포함하는 활동인가라는 상호작용의 단계와 사회적 혹은 물리적 변화의 효과를 추구하는가 하는 활동의 목표에 의해 다음과 같은 표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¹²⁾

활동의 목표	상호작용의 단계		
	구 分	개 인	이 웃
	물리적 변화	목표 고착 (Target hardening)	환경 재설계 (Environmental redesign)
사회적 변화		대항 행동 (Coping behaviors)	협동 활동 (Cooperating activities)

물리적 변화에서 목표고착(Target hardening)은 강도범죄에 초점을 두고 범죄의 목표를 고착시키는 시도로서 가정 및 직장의 안전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은 강력하고 새로운 자물쇠의 사용, 창문걸개, 기타 물리적인 장애물 등을 포함한다.

물리적 변화에서 환경재설계(Environmental redesign)란 물질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나 그러한 변화 등은 한 가정보다는 이웃들이 협력해 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가로등 밝히기 개선, 도로 폭과 교통 형태의 변화, 지역주민 정화 등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적 변화에서 대항 행동(Coping behaviors)은 어떤 지역의 출입을 삼간다든지, 피해자화의 기회 및 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의도에서 각 개인들이 대항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회적 변화에서 협동 활동(Cooperating activities)은 이웃차원에서의 범죄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방법은 이웃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재산을 관찰토록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에 의한 상호작용을 증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신변보호 자원봉사, 시민순찰, 구간별 관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잠재적 범죄를 좌절시킬 수도 있고, 이웃들을 잘 알고 기꺼이 자원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주민들에 의해 범죄자를 체포할 수도 있는 것이다.¹³⁾

12) James J. Fyfe, Police Management Today, -Issues and Case Studies :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1985, pp. 135~137.

13) ibid., pp. 136~137.

그리므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범죄예방활동인 민간자율방범활동은 위의 분류에서 사회적 변화 중 협동 활동(Cooperating activities)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이론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제시할 수 있다.

가.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

상황적 범죄예방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특정유형의 범죄발생 환경을 관리하고 조정함으로써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겸거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상황적 범죄예방에서는 범죄자의 자기책임성이 강조되며, 인간은 주어진 조건에서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에 따라 행동한다는 공리주의적 이론의 바탕 위에서 범죄행위를 분석한다.¹⁴⁾

이러한 상황적 대책은 크게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눠 볼 수 있다. 즉, ① 범죄실행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안전대책과 ②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대한 비용과 이익에 영향을 주는 대책으로 나눌 수 있는 데, ②번에서 범행에 따른 비용이나 이득은 다시 ① 범행 유인을 감소시키거나 ② 겸거의 실제적인 혹은 인식되는 위협을 증가시킴으로써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후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감시를 늘임으로써 가능하며, 이 방법은 다른 예방책들처럼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인력 집약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시방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를 떨 수 있는데 물리적 환경에 대한 ① 기술적 감시, ② 공식적·비공식적 감시, ③ 자연적 감시 등이다. 이중 공식적·비공식적 감시에서 비공식적 감시는 일반 공공 서비스 직원, 회사직원, 또 일반시민들에 의해 행해진다. 가장 비공식적인 감시유형은 일반시민들에 의해 그들의 주거지역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 행해지는 감시로서 대체로 두 가지 주요방식이 있다. 시민의 순찰을 통한 방법과 이웃감시를 통한 방법이다.¹⁵⁾

14) 이기현 외,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4-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p. 32.

15) 최인섭, 전계논문, pp. 111~122.

이러한 범죄발생의 상황적 요인을 다른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범죄발생의 기회요건과 상황요인을 파악하려고 했던 범죄기회이론(criminal opportunity theory)을 들 수 있다. 어떠한 상황이 다른 상황보다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가에 초점을 두고 그 상황요건을 발견하려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범죄피해는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특정한 인구층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본다. 범죄피해 발생요건으로 네 가지 요건을 제시하는데 이는 범죄자와의 접근성, 범죄위험에의 노출, 범죄대상의 매력, 감독의 부재가 그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 중 감독과 감시체계가 강한 상황에서는 발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죄를 포기하게 되지만 감시가 소홀한 상황에서는 쉽게 범죄를 하기 때문에 감독의 여부에 따라 범죄발생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면은 지역주민에 의한 범죄예방활동의 효과성에 대하여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상황에 대한 행위자의 합리적 판단이 범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는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도 대표적인 상황적 범죄이론으로 분류된다. 이 이론은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경제학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범죄행위란 범죄성향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되며 범죄로 인한 이득과 손실에 대한 행위자의 판단에 따라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비범죄에 대한 기회와 이익 및 유인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 지역사회 범죄 예방(Community Crime Prevention)

범죄의 근본원인이 사회구조적·과정에 있으므로 이 분야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범죄 예방을 시도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이론적 측면을 종합¹⁶⁾하여 대두된 지역사회 범죄 예방 개념은 경찰과 지역주민이 서로 협력하여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재원을 마련하며, 운영하는 종합적인 범죄예방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율적인 범죄예방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국가에 의한 범죄문제 해결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스스로 지킨다는 시민의식에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론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① 지역사회의 범죄는 범죄자의 범죄욕구와 그 지역의 환경과 주민에 의하여 제공되는 범죄기회를 상호관계 속

16) 최창운,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호, 한국공안행정학회, 1998, p. 179.

에서 발생한다. ② 따라서 범죄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임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③ 범죄기회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공공감시의 증대, 범죄취약성의 개선, 범죄예방활동의 참여 등을 통하여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활동에 대한 경찰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④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활동은 범죄발생 그 자체도 감소시키지만, 지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감소시킨다. 실제 범죄의 감소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이것은 다시 실제 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⁷⁾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근거한 지역사회 범죄예방론에서는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기회의 감소, 지역사회의 비공식적인 사회통제의 강화,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3. 외국에서의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

가. 미국

범죄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는 주민들에게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사회를 결집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방범의 예로 미국에서 많이 운용되는 제도에는 이웃감시프로그램(neighborhood watch program), 시민순찰제도, 재물번호신고 제도 등이 있다.

1) 이웃감시프로그램(neighborhood watch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우선 지역주민들이 서로간에 잘 알게 된 상태에서 지역 내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실행되고 있는데, 주거지역 내에서 아파트 혹은 가까운 이웃끼리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감시체계를 형성하여 집을 비우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 가까운 이웃을 중심으로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조직된 거주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진다거나 몇 개 가정을 한 단위로 하여 감시집단을 이루며 활동을 하게 된다. 통상 정규적으로 모임을 하거나 활동사항에 대한 회보를 발간하기도 한다. 회보에는 지역범죄통계관련 최신정보나 새로 조직된 감시집단의 공시, 성공사례 등이

17) 이기현 외, 전계보고서, p. 37.

게재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여주민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는데 효과적이며, 범죄에 대응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의 범죄예방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시민순찰활동

시민순찰은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거주지역을 계획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찰의 순찰활동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감시기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민순찰은 경찰의 순찰활동과는 달리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할 경우 물리적인 억제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단지 감시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기능을 한다. 시민순찰의 한 예로 국제적인 관심을 얻고 있는 미국의 수호천사(Guardian Angels)의 경우, 수호천사는 다른 시민순찰과는 달리 전국적인 규모로 운영되며 특히 소수민족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특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⁸⁾

수호천사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순찰지역의 폭력범죄를 감소시키거나 억제하는 것이다. 수호천사가 예방하고자 하는 범죄는 폭행, 강간, 강도, 그 밖의 다른 대인범죄 등이다.¹⁹⁾

수호천사는 1979년 2월 13일 Curtis Sliwa에 의해 13명의 회원으로 뉴욕에서 결성되어 1999년 7월 현재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67개 지부에 5,000여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통상 주당 8~10 시간 정도 주말과 저녁시간을 이용하며 순찰을 돌면서 봉사자들의 눈에 띄는 범죄에 대한 예방에 효과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장애자, 노인들에 대한 에스코트 등 추가적인 지역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마약범죄 추방을 위해 각급 학교에 대한 홍보활동과 가두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6세 이상 되어야 하며 가격요건을 구비한 후에는 주당 10시간씩 3개월에 걸친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신의 신변보호, 구급법, 체포술, 순찰기법 등을 마친 후에는 매주 8시간씩 최소한 2번 정도 순찰을 실시한다.

수호천사는 순찰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의를 얻고 있다.²⁰⁾ 시민들은 수호천사가 있을 때 보다 안전함을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이 활동하는

18) Pennell et.al., "Guardian Angels : A Unique Approach to Crime Prevention," *Crime & Delinquency*, 1989, p.380.

19) Conklin, op. cit, p.377.

20) Lab, Steven P. *Crime Prevention : Approaches and Evaluations*, 2nd ed., Ohio : Anderson Pub. Co, 1992, pp. 61~62.

지역의 범죄율이 다른 지역의 범죄율에 비해 낮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한다.²¹⁾ 이러한 결과는 수호천사가 실질적인 범죄의 감소에 기여하지는 못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에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3) 지역봉사단(community - service officer)

이는 경찰활동을 보완하여 지역의 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 지역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경찰보조프로그램이다. 이 단체의 구성원은 경찰활동을 수행할 자세와 능력을 갖춘 17세에서 21세의 지역 젊은이로 구성된다. 이들은 경찰을 지원하여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의사교환을 돋고, 시민의 불평과 문제를 파악하며, 부상자 및 화재 등의 긴급사태를 지원하고, 사소한 절도, 폭력 등의 수사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²²⁾

나. 일 본

전통적으로 일본지역사회에 있어서 자신들의 지역은 자신들의 손으로 지킨다는 의식이 강했으며 지역 내에 의심스러운 자가 배회할 경우 주민이 스스로 감시를 하는 활동 등이 지역사회의 범죄를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도시화 진전 등으로 도심에 있어서의 고층화 아파트 등 일시적 거주자의 증가와 도시교외의 새로운 형성이 뒤따르면서 종래의 거주자들에게 쌓여졌던 지역연대의식이 붕괴하거나 새로운 지역연대의식이 약해짐에 따라 지역에서의 치안수준의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하에서 지역사회의 방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연대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²³⁾이라는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일본의 지역단위 방범활동이다.

일본의 경우 방범활동은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경찰서 단위로 방범협회라는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활동한다. 이 협회는 전국방범협회연합회를 정점으로 현(縣)단위의 협회에 이르기까지 계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 지역의 지도급 인사가 교대로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각급 경찰관서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청소년에 유해한 환경정화활동을 하거나 범죄예방포스터, 안내서, 게시판 등을 고안, 배포하고 방범영화를 제작하며 월간지를 발행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24

21) Pennell, op. cit, p. 380.

22) Trojanowicz, R. C., and S. L. Dixon, s, Criminal Justice and the Communit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4, pp. 289~290.

23) 警察制度研究會, 「警察」(東京 : ぎょうせい) 昭和 60年, p. 224.

시간 편의점에 대한 심야강도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편의점단위로 방범단체가 결성되기도 하고 은행, 전당포, 유통업소, 숙박업소 등 직능별 방범협회가 조직되어 가고 있다.²⁴⁾

일본의 지역주민 범죄예방활동은 활동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동회임원들이 행하는 자율방범순찰의 실시에 순찰방법을 지도함과 아울러 조명기구를 대여해 준다든가 아동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초등학교에 팩스로 지역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초등학교과 학부형과 협의하고 학부형이 자발적인 순찰활동을 하는 등 지역경찰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거나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²⁵⁾

또한 지역주민이 행하는 지역안전활동은 GH(Get Our Security with Hands)운동의 전개, 위험지구의 점검과 보수, 합동순찰, 고령자·아동에 대한 지역안전활동, 지역안전센터의 건설 등이 있는데, 이 중 GH운동은 ‘우리들의 거리는 우리들의 손으로 지킨다’라는 것으로 近鐵八尾驛前 고반연락협의회가 시작하여, 동협의회·부인단체연합회·상공회의소 직원·고반근무원이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다.²⁶⁾

다. 영 국

영국의 이웃감시프로그램은 1980년대 초반에 런던에서 시작되었는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의 전세계적인 발전과 미국의 지역사회 범죄예방 분야에서의 혁신을 배경으로 삼는다. 영국에서는 1982년에 최초로 시작하여 1985년 3월에는 1,190개가 되었으며 1990년에는 66,500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이웃감시조직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조직유형에 있어서 미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조직의 크기에 있어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Block Watch인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Neighbor Watch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전자가 20~30가구 정도의 작은 가구들로 이루어진데 반하여, 후자는 300~3,000가구 정도의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이웃감시조직은 조직의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모임을 갖는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조직의 대표자들만이 참여하는 모임을 갖는다. 이러한 차이는

24) 이건종, '각국의 범죄예방,' 「범죄예방정책과 방향」, (제13회 형사정책세미나 자료), 한국형 사정 책연구원, 1994, p. 19.

25) 松木義人 金子昌泰, “地域安全活動へのアプローチ- 地域安全活動の 果實” 경찰학논집 제48권 제7호, 1995. 7., 95쪽, 전대양, ‘일본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4호, 통권 제32호, 1997, 겨울호, p. 160에서 재인용

26) 상계논문, p. 165.

조직규모의 차이와 관련된다.²⁷⁾

III. 한국에서의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이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로부터 범죄 및 비행을 제거하고 범죄 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방법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일컫는다

예컨대 지역단위로 방범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주민의 방범의식을 높이고, 주민순찰대를 조직하여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위적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사례 등은 모두 지역방범활동에 해당된다.²⁸⁾

이러한 활동은 국민의 자위방범의 필요성에 의하여 발달된 것으로, 경찰의 방범활동은 어디까지나 이들 자위방범체제와의 종합적 협조로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크게 거양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과 협조가 절실한 것이다.²⁹⁾

본 논문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을 자율방범대와 기동순찰대, 예비역 군인으로 구성된 해병전우회 등 대표적인 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의 역사와 성과

가.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던 제도 중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의 전형적인 형태는 방범대원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1953년 11월 공비토벌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동 단위로 주민야경대를 발족하여 주민이 윤번제 방범순찰(나무 딱딱이 치기)을 실시하는 것을 계기로 만들어 졌다. 그러나 1962년 5월 3일에 윤번제 야경 실시로 인한 생업의 지장이 문제되어 법적 근거 없이 주민이 방범비를 부담키로 하

27) 최인섭, 전계보고서, pp. 137~138.

28) 이황우,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범죄예방정책과 방향」, (제13회 형사 정책 세미나 자료),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1994, p.73.

29) 김상희 외, "파출소단위 방범활동의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9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p. 33.

고 유급제 방범원 채용으로 개념이 전환됨으로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봉사에 의한 범죄예방활동의 개념과는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27여년 유지되어 오던 이 제도는 1989년 3월 1일을 기해서 방범비 부과 기준을 재산세 및 오물수거료 기준으로 하여 세대주가 은행에 자진 납부토록 제도화되었으며, 당시 7,562명의 방범대원을 전원 지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주민의 자율방범활동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떠나 공식적 사회 통제 체제로 변형³⁰⁾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동 제도가 폐지된 1989년 이후 비로소 순수한 의미의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의 성과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을 추진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을 때 개인차원과 거주지역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차원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활동이나 사경비에 의뢰하여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고, 거주지역단위란 거주지역단위별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조직성을 가지고 범죄의 방지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유형의 방범활동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반상회, 민방위 조직, 예비군 조직 등을 범죄자 단속에 동원하거나, 주민기동순찰대를 조직하여 독자적으로 혹은 경찰과 협동으로 방범순찰을 실시하는 형태의 방범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거주지역단위의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은 전국차원으로 확대하여 활동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기동순찰대, 모범운전자회 등이 조직되어 있고 경찰, 시청 등 행정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주민자율방범대, 주민기동순찰대 등이 조직되어 방범순찰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방범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주민과 경찰이 협력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 협력단체와 그 주요단체로는 ‘자율방범대’³¹⁾ 와 ‘방범자문위원회’ 및 ‘청소년선도위원회’를 들 수 있다.

30) 김형청, “경찰순찰활동의 실태와 발전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9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p. 77.

31)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각 지역에 따라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었는데, 서울의 경우 경찰과 긴밀한 협조하에 범죄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는 조직은 자율방범대이며, 경기지역의 경우 기동순찰대는 그 규모나 경찰과의 협조체계가 자율방범대보다 훨씬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경찰백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율방범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모든 단체를 망라한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한다.

96년 말 현재 자율방범대는 전국적으로 총 3,884개 조직에 9만 5천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6년 한해 동안 6,600여건의 범죄신고와 5,300여건의 형사범 검거실적을 거두어 지역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단위(건)

범죄신고	형사범 합동검거 실적			
	계	강·절도	폭력	기타
6,652	5,26	189	1,487	3,650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민방위 해당자는 기본교육을 면제 조치하고, 자율방범 활동 중 범죄신고로 범인을 검거한 경우나 범죄자를 제지·체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에는 적극적으로 보상금 지급과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범인 검거 등 공로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96년도에도 경찰청장 포상 13명을 비롯하여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총 227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다.³²⁾

2.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의 실태

가. 서울지역 자율방범대

서울지역에는 자율방범대와 기동순찰대가 함께 활동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리규칙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파출소 단위로 구성한 자율적 봉사조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훈령 예규집 방범부에 자율방범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의 방범자문위원회와 자율방범대관리규칙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방범활동을 하는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민협력 방범체제를 구축하고 자위방범의식을 강화하여 범죄를 예방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자율방범대와 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32) 경찰청, 「경찰백서」, 1997. pp. 181~182.

되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자율방범대³³⁾만이 경찰청의 규정에 의해 활동에 대한 지도와 상호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동순찰대와 해병전우회는 자율방범대와 하는 임무는 거의 대동소이하나 경찰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며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지역에 대한 교통봉사, 순찰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주민의 범죄예방활동이 다원화되어 있었다.

서울지역의 자율방범대활동을 위해 파출소 단위에서는 방범자문위원회를 두고, 방범자문연합회는 파출소 방범자문위원장과 기타 지역 방범에 관심을 가진 인사 등을 위촉 구성하고 연합회장, 부회장, 총무를 두며 이 때 자율방범연합대장은 연합회부회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경찰청에 각 경찰서 연합회장과 기타 지역방범에 관심을 가진 인사 등을 위촉, 방범자문총연합회를 구성하고 총연합회장, 부회장, 총무를 두고 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파출소 경찰관들과 함께 또는 자율적으로 야간 등 방범상 취약한 시간에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순찰도중 사건이 발생하면 자체 무선망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신고를 하고 경찰관에 대한 현장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①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현행범 체포, 범죄신고, ②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 보호, ③ 경찰과 합동근무시 신고출동, ④ 무질서 행위, 오물 무단투기행위 등 계도, ⑤ 주취자 보호 및 안내, ⑥ 관내 주요행사시 경찰과 협조 질서유지 및 기타 경찰업무 보조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 경찰과 합동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권 등 여건에 따라 자체조별(3~6명)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근무중 취급사항을 별지의 양식에 의거 기록 유지하며 근무 배치전 파출소장의 순찰 및 방범활동요령 등 지도교양을 받아 근무에 임하며 근무시간은 야간을 원칙으로 하며 파출소장은 지역 설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파출소장(부소장)은 근무시간 배치 전 합동순찰, 방범활동요령 등 근무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율방범대원 중 야간방범활동 등에 참여한 자로 민방위 해당자는 해당 동장과 협의 민방위교육 등 기본교육을 면제 조치할 수 있다.³⁴⁾

자율방범대원은 지역거주 또는 거소자로서 자율방범을 자원하는 자로 방범자문위원 또는 자율방범대장의 추천을 받아 방범자문위원회장이 임명하며, 파출소장은 선임 예정자

33) 통상 파출소 산하에는 자율방범대를 비롯 방범위원회, 대공(보안)지도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경찰과 보조를 맞추어 활동하고 있다.

34) 서울지방경찰청 예규,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의 방범자문위원회와 자율방범대 관리규칙, 1998. 12. 26 예규 제73호 제정, pp. 320~325.

증 방범활동에 부적합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범자문위원장에게 통보하며 자율방범대장은 자율방범대원 제적 과반수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방범자문위원회에서 선발한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으로서는 ① 과출소 관내 거주자로서 만 25세 이상 남·여 ② 경찰대상업소의 업주가 아닌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여 주민의 신망이 높고 방범의식이 투철하며 협동 봉사정신이 강한 자 ③ 사회지탄 대상이 되는 범죄전력이 없는 자(파렴치 범죄) ④ 기타 과출소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나. 경기지역 기동순찰대

경기지역 기동순찰대는 1985년 5월 23일 자율방범대로 창설하여 활동을 해 오다 1994년 5월 16일 민간기동순찰대로 명칭을 바꾸어³⁵⁾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민간기동순찰대는 전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범죄예방, 선도, 수송, 신고출동, 새 생활 새 질서 운동,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기타 활동 등을 하고 있다.³⁶⁾ 민간기동순찰대는 자율방범대와는 달리 경찰관서와 협조관계는 유지하되 독립적인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경찰에서 요청하면 보조역할을 하기도 한다.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의 '기동순찰대'는 양촌면 일대의 40개부락 2,400여 가구의 방범활동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은 마을유지들과 지서측의 협력하에 오토바이를 소유한 20명의 젊은 청년들을 대원으로 하여 양곡지서 기동순찰대를 발족시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³⁷⁾하고 있다. 민간기동순찰대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낮에는 교통정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고, 대개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2명 1개조로 자체 차량을 이용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하고 있었다. 또한 자체적으로 무전을 이용 근무감독을 하고 있으며 제복과 계급을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관과 협동으로 순찰을 돋아든가 하

35) 민간기동순찰대로 명칭을 바꾸게 된 배경은 경찰의 통제를 받고 있던 자율방범대의 일부가 경찰의 통제를 받지 않고 검찰청과도 협조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기동순찰대로 단체의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오히려 자율방범대보다 그 규모나 활동 범위를 더욱 넓혀 활동하고 있는 편이다.

36) 경기도 민간기동순찰대에서는 각 시군 별로 활동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는데 범죄예방에는 절도범, 강력범, 폭력범, 선도활동대상은 청소년, 미아, 취객 그리고 사고환자, 폭행피해자, 임산부, 취객, 응급환자 등에 대한 수송과 각종신고 출동, 그리고 교통질서예방을 비롯 쓰레기 불법투기적발, 행락질서, 자연보호, 거리질서, 샛강살리기 등의 새 생활 새 질서운동, 교통안내, 우범지역 교외지도, 학생수송, 유해업소 청소년 선도를 포함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37) 최창운, 전계논문, p. 190.

는 협력관계는 경찰에서 요구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 해병전우회

해병전우회는 1989년 4월 15일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를 창설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총재하에 부총재 1실 3국 봉사대 본부로 이루어져 있고 각 지구별 12개 연합회와 217개 지회, 134개 기동 및 환경봉사대로 구성되며 친목단체는 118개가 있고 해외지회는 미국 26개 지국을 비롯 캐나다 등 33개 지회가 있으며 중앙회, 연합회, 지회, 분회로 구분하여 각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걱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복장은 현역과 동일하거나 유사군복이나 군복³⁸⁾을 착용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경찰의 통제 없이 자체적으로 야간순찰과 방범활동, 교통정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부와 협조하여 환경기동순찰과 겹찰에서 주관하는 자녀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운동과 가출 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주로 하고 있으며 해병저널, 전우신문, 팔각모 등의 신문, 잡지 등을 발간하고 있고 인원구성은 하사관, 장교, 병 구분 없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해병전우회가 결성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의 여러 해병전우회가 실시하고 있는 활동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몇 개 지역의 활동을 간단히 살펴보면, 서울의 관악지구의 경우 1990년 1월 21일 기동봉사대 발대식 및 전우회 발대식을 가지고 4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기동대 차량 2대로 정기적인 순찰과 인명구조대의 수상인명구조 활동과 수중정화작업 등을 하기도 하고 삼풍백화점 봉고시 인명구조활동을 펴기도 하였다.

경기도 가평지구는 유원지와 인접해 있어 유원지를 대상으로 가평군청에서 내준 행락질서 단속요원자격으로 가평군 관내 6개 읍·면을 수시로 순찰하고 있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으로 청소년 보호활동 및 학원폭력 예방활동을 하기도 한다.

회원이 3만 명에 이르는 포항시 해병전우회는 26개 분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88년 6월에 중앙회에 등록하여 자율기동봉사대를 조직 인명구조와 재난구조, 응급환자 후송,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포항시에서는 기동순찰대를 시민 자원경찰 봉사대로 위촉하여 상호협조체제를 이루어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 해병대전우회 역시 해병대전우회에서 실시하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교통정

38) 해병전우회가 군복을 착용하고 재난구조와 교통정리나 범죄예방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도 있으며 국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장, 현역과는 구분되는 복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98년도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의원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리, 우범지역 순찰 및 청소년 선도, 해상·산악구조활동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어 범죄 예방활동 차원에서 주로 순찰을 하고 있다.³⁹⁾

IV.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의 문제점과 대책

이상과 같이 살펴본 한국에서의 지역주민 범죄예방활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문제점

첫째,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미정립과 이에 따른 통계의 부정확성을 들 수 있다. 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란 용어는 자율방범대, 민간기동 순찰대, 해병전우회, 새마을 방범대 등 다양한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단체 등을 망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통계 자체가 부정확하였으며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단체와 관련된 실적, 근무실태, 활동 중 피해실태 등에 대한 통계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각 단체간의 업무가 상호 중복되어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지역별로 자율방범대와 기동순찰대, 그리고 해병전우회 등의 단체가 하고 있는 업무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었다. 물론 각 단체가 표명하고 있는 존재목적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으나 그 활동의 범위는 크게 상이하지 않다. 그러한 배경에 비해 각 단체간의 협조는 별로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범죄예방활동인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거나 호응도가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홍보가 부족하여 활동 사항을 주민들이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일부 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주민이 보내고 있는 때로는 차가운 시선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왜 자원봉사자들이 저런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 생계에 지장이 없으니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일부 있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홍보가 극히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민

39) 국방119, 1998. 6월(통권 2호) 7월호(통권 3호) 참조.

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로 활동에 대한 홍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을 배경으로 활동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한 홍보가 조직적이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넷째, 국가차원에서 범죄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인 경찰과의 연계적인 활동이 부족한 점이다.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은 경찰과의 협조를 필요로 하나 실지로는 이러한 면에서 충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의 한계로서는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면 참여의 한계, 즉 무기휴대와 체포의 권한 등이 그것이다. 이웃감시와 시민순찰로 대표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의 민간인 참여는 활동의 한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들은 목격한 범죄활동에 대하여 경찰의 눈과 귀가 되는 감시하고 신고하는 기능을 일반적으로 부여받을 뿐이다.⁴⁰⁾

다섯째,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일선경찰관과의 갈등에 따른 비협조적인 분위기를 지적할 수 있다. 일선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소수 경찰관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자원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공권력을 대표하는 일부 파출소 직원의 불친절은 지역주민의 범죄예방활동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경찰 등의 국가공기관의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지역주민이 자원봉사의 형식으로 참여하는 범죄예방활동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은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권력을 이용한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월권행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파출소를 단위로 한 민간방범조직의 구성은 실제에 있어서 공식적 사회통제의 민간조직에의 확장이라는 측면을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조직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자신들의 범법 내지 비리행위에 대한 묵인이나 엄폐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민간의 자율방범활동이 본래의 순수한 취지를 벗어나서 반대급부를 얻기 위한 일종의 흥정거리로 전락해 버릴 위험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선경찰조직과 일부 유력한 지역유지들과의 유착현상을 초래케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선별적 내지 차별적 사회통제의 폐단을 발생시키게 된다.⁴¹⁾ 자율방범에 있어서 주민의 절대적인 참여란

40) 최인섭, 전계논문, p. 144.

41) 신동운, 전계논문, p. 324.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주민의 절대적인 참여에도 한국사회는 그 참여의 수준이 초보적인 것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따르는 책임과 금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주민참여가 공권력의 집행을 도우기 보다는 공권력을 등에 업고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소수의 적극적인 참여자나 특수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등으로 전락함으로써 경찰행정이 공정성을 잃을 가능성성이 있고 나아가 주민의 참여의의가 퇴색되거나 상실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일곱째, 일부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은 착용하는 복장에 있어서 군복을 착용하고 활동함으로써 현행법⁴²⁾을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와 범죄예방을 하는 좋은 취지가 바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

여덟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이 대부분 순찰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나치게 단순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아홉째,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공공적 측면의 여러 각도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단체 사무실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봉사활동 중 발생한 각종 피해, 사고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부족하여 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을 때의 적절한 보상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은 이러한 면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열째, 현재 자원봉사에 참가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나 단체들의 폭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앞으로 참여폭을 확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대 책

첫째, 자율방범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방범을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이라는 용어로 대치하고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 등으로 분류하여 이들 단체들에 대한 현황과 실적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사항, 피해사항 등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42)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국방부에서는 해병전우회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해병전우회 회원이 활동시 군복을 착용치 말 것을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통보하였으나 실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현재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단체들의 업무를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지역 내 기타 봉사기관과 연계한 각 단체간의 협조를 위해 경찰의 역할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작조하여 활동하는 폭을 넓혀 보다 효율적으로 이들 단체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과 주민이 함께 순찰을 할 경우에는 불의의 공격을 당하더라도 무기를 휴대한 경찰이 주민순찰대원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찰의 순찰활동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전국 각 지역의 주민들은 주민자율방범대 혹은 민간기동순찰대 등을 조직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자율방범활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게 하려면 경찰의 활동과 주민자율방범활동 사이에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지도와 조정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주민자율방범대의 순찰범위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한정되지만 경찰의 순찰지역과 중복되게 마련이므로 경찰의 순찰활동과 자율방범대의 순찰활동을 상호보완적으로 연계시키면 순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민간협력순찰체계구축⁴³⁾ 등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 단체뿐 아니라 경찰이나 행정관서에서도 각종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주민자율방범활동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주민이 방범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의 전문성에 대한 도전이며 간섭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민간의 방범활동참여를 허용하면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사소한 범죄를 예방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민간이 범죄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와 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며 아울러 민간의 참여 그 자체로 인한 문제이기보다는 경험과 지도력의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크므로 설득을 통해서 인식을 환기시켜 주어야 한다.⁴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월별로 주민들에게 활동상을 홍보하는 등 음지

43) 김형청, 전계보고서, pp. 76~80.

44) 이황우, 전계보고서, pp. 92~97.

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이나 생활정보지 또한 행정관서의 게시판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그들의 활동상황을 다양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그들의 활동을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자원봉사자 스스로 봉사하는 자세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자신들은 봉사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면 자율방범활동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자궁심을 내세우면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경찰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하여 한정된 경찰력만으로는 완전한 방법의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방범단체의 자위방범활동이야 말로 방범대책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이들 방범단체에 대한 경찰의 협조는 실로 중요하다. 경찰은 이들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모든 편의와 지도,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 방범단체는 구역 내의 범죄유발요인을 제거하고 능동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게 되는데, 방범시설의 경비, 신속한 신고체제의 확립, 구역 내의 경비, 순찰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는데 경찰이 사전에 충분한 교양과 지도를 하여 주고 필요한 경우에 감찰도 하여야 한다.⁴⁵⁾

주민과 자원봉사자가 지역안전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정보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지역의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구체적 활동으로 옮기고, 활동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또 활동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안전에 관한 세밀한 정보를 받는 것이 불가결한 일이다.⁴⁶⁾

자율방범순찰과 경찰순찰과의 상호협력 순찰에 관해서 살펴보면 종래 주민자율방범활동의 제일보는 주민에 의한 단순한 관찰과 신고활동이지만, 이보다 발전한 형태는 좀 더 가시적, 물리적 순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주민의 방범순찰의 범위는 거주지역에 한정되지만, 경찰의 순찰지역과 중복되기 마련이므로 자율방범대와 경찰은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순찰근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는 합동순찰의 방법이 있는데,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권도 가지고 있으므로 경찰과 합동으로 순찰을 한다면, 경찰의 방범순찰 효과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또 경찰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으므로 합동순찰시는 불의의 공격과 위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율방범 순찰의 권위

45) 김상희 외, 전개보고서, p. 38.

46) 전대양, 전개논문, p. 156.

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기왕에 조직된 전국 시단위 이상 방범봉사대와 방범기동대와의 합동순찰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⁴⁷⁾

다섯째,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일부 일선경찰관과의 갈등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즉, 일선경찰관에게는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이 근본적으로 공권력을 보완해 주기 위한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갈등해소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에 대해 불친절한 행동을 하여 갈등요인이 되는 직원에 대한 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범죄예방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 역시 경찰과의 관계개선이 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 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월권행위나 집단이익대표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거나 경찰에 의한 감독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율방범활동을 추진한다는 구실로 외부인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자율방범활동을 구실로 주민상호간에 의구심이나 불신풍조가 조성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과정 중 자원봉사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복장은 지나치게 관의 복장을 모방하고 있거나 군복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선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복장이 단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지역주민간 발생할 수 있는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떠한 복장을 착용하고 활동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견수렴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덟째, 외국에서의 경우와 같이 동행봉사, 이웃감시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는 이러한 봉사를 원할 시에는 바로 전화로 연락하여 봉사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주민들이 실지로 이러한 봉사단체의 봉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위험시간대에 우범지대를 통과해야 하는 여성의 경우 이러한 동행봉사를 미리 요청하는 등의 활동으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각 단체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찰에서는 상황발생시 조치요령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하여 순찰과정에서 불필요한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경찰력으로 메우기 어려운 부분을 많이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47) 김형청, 전개보고서, pp. 76.

아홉째,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단체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등 각종 지원들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무실 등은 우범지역이나 공원지역 등에 설치되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을 때 의인(義人)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법에 대한 정비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열째, 현재 자원봉사에 참가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나 단체들의 폭을 대폭 늘려야 한다. 여기에는 경우회 등을 활용한 전직경찰관⁴⁸⁾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청소년에 의한 봉사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V. 결 론

경찰의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프로그램은 경찰과 지역주민이 서로 협조하여 수행하는 범죄예방프로그램을 말한다. 주로 경찰은 자원 및 정보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범죄예방은 사회의 다양한 환경과 체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범죄예방에 대하여 시민의 참여는 불가피하며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증진할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찰은 시민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주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찰과 지역사회는 서로 노력해야 한다. 이는 경찰에 의한 일방적 의사전달을 넘어서 시민의 의사가 경찰에도 전달되고, 경찰은 그러한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범죄예방정책과 프로그램에 고려해야 한다. 경찰은 시민 개개인의 참여보다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며 되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을 극대화하여야 한다.⁴⁹⁾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 방범활동은 지역주민의 자경적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지역주민의 자치의식과 경찰기능의 보완적, 협력적 측면에서 모색되는 현대시

48) 일본에서는 교번상담원 제도를 창설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대주민 서비스가 치안유지와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현실에서 자원봉사의 형식으로 지역주민 중 퇴직경찰관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는 것도 협역경찰과의 협조면에서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박병식 외, 「파출소 근무제도 및 순찰활동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97-05, 치안연구소, 1997, p. 120.에서 참조.

49) 이기현 외, 전개보고서, p. 94.

민사회의 새로운 범죄예방체제인데, 효과적인 방범활동을 위해서는 주민협력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협력체제의 확립과 조직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찰자체의 방범에 대한 개념을 시정하고 범죄의 예방과 피해의 방지는 경찰력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과 시민의 협력이 절대적 요소임을 인식하고 범죄에 대한 시민의 무관심은 범죄자의 존재를 송인하고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⁵⁰⁾

성공적인 범죄퇴치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고려하여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프로그램이 그 지역의 요구와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은 지역사회에 대해 새로운 자신감을 가져야 하며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기동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⁵¹⁾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에 의한 범죄신고율 제고방안이 함께 연구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지역주민 참여 범죄예방활동의 역사가 길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기준과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지역사회활동의 명백한 관계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하이테크 범죄예방을 포함한 첨단범죄에도 컴퓨터 운용능력을 가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 개념의 지역주민에 의한 범죄예방 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50) 이상안, 현대경찰행정학, 서울 : 형설출판사, 1986, pp. 477~478.

51) 김형청, 전계보고서, p. 114.

參 考 文 獻

■ 국내문헌

- 김상희 외, “파출소단위 방범활동의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90-17),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0.
- 김형청, “경찰순찰활동의 실태와 발전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9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박병식 외, 「파출소 근무제도 및 순찰활동 개선방안」(연구보고서 97-05), 치안연구소, 1997.
- 신동운, 「민간의 자율방범활동」, 형사정책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0).
- 이기현 외,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4-18),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5.
- 이건종, “각국의 범죄예방,” 범죄예방정책과 방향, (제13회 형사 정책세미나 자료),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4.
- 이상안, 현대경찰행정학(서울 : 형설출판사, 1986).
- 이황우,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범죄예방정책과 방향」, (제13회 형사 정책세미나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전대양, 일본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4호(통권 제32 호, 1997, 겨울호).
- 최인섭,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간인 참여,’ 「범죄예방정책과 방향」(제13회 형사정책세 미나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최창운, “상황적 범죄예방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호(한국공안행정학 회, 1998).

■ 외국문헌

- 하워드 얼저, 김충남 역, 경찰과 지역사회(서울 : 여명출판사), 1992.
- 上野治男, 美國の 警察(東京 : 良書普及會, 1982).
- 警察制度研究會, 『警察』(東京 : ぎょうせい) 昭和 60年.
- Black, Donald J. The Behavior of Law, NY : Academic Press, 1976.

- Conklin, John E. 1989. Criminology, 3rd ed., NY : Macmillan Publishing Co. James J. Fyfe, Police Management Today, -Issues and Case Studies :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1985.
- Lab, Steven P. Crime Prevention : Approaches and Evaluations, 2nd ed., Ohio : Anderson Pub. Co., 1992.
- Pennell et.al., "Guardian Angels: A Unique Approach to Crime Prevention," Crime & Delinquency, 1989.
- Trojanowicz, R. C., and S. L. Dixon,s, Criminal Justice and the Communit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4.

■ 기 타

- 경찰청, 「경찰백서」, 1997.
- 국방119, 1998. 6월(통권 제2호) 7월호(통권 제3호)
- 서울지방경찰청 예규,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방범자문위원회 자율방범대
관리규칙(1998. 12. 26 예규 제73호 제정)

ABSTRACT

A STUDY ON COMMUNITY RESIDENTS PARTICIPATION IN CRIME PREVENTION ACTIVITY

Oh, Yoon Sung

In modern society, a spontaneous phenomenon that community residents' participation in crime prevention sphere is increasing now due to the recognition that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control crime only by the limited official power(police) is spreading in the society.

In the consideration of crime occurrence, the fear of crime does not belong to a certain person any more, but it turns to a matter of common interest for all people.

If the recognition of community problems is well understood and analysed, the effect of community residents' participation in crime prevention will appear more eminent and definite.

For a long period of time, thanks to the community residents' participation in crime prevention, it has been possible to sustain safety and stability of local community. Ultimately not only the police could reduce the crime problems but local community could decrease a fear of crime.

In this study, for maximized effect of crime prevention, it is focused on the role of the community residents' participation in crime prevention. For desirable interrelations among service group and residents, police, first the review of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and community crime prevention theory was studied. And the community residents participation to crime prevention activity in U.S.A, Japan etc was reviewed.

By interviewing actual participants in community crime prevention activity,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the community residents' participation in crime prevention activity and desirable direction was suggested